

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

윤민섭 박사

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

목 차

I. P2P 대출의 구조

II. 행위규제

III. 투자자보호 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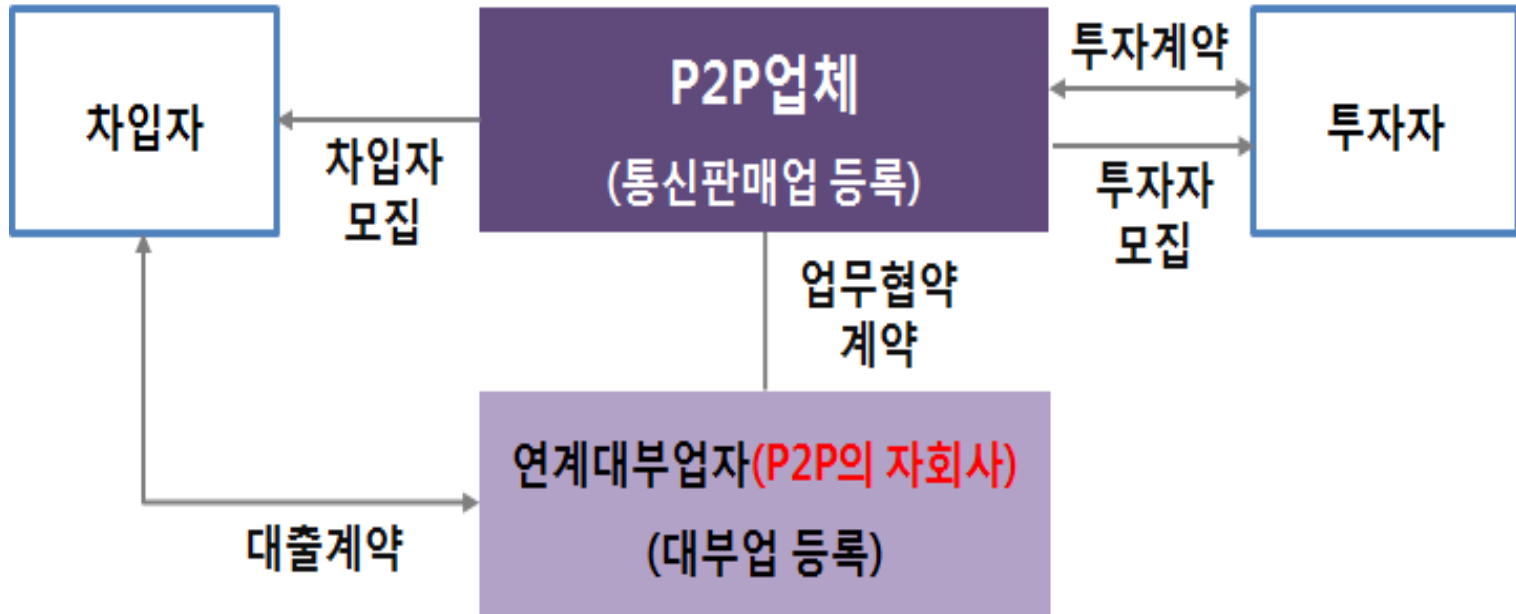
IV. 한도규제

V. 기타 사항

I. P2P대출의 구조

1. P2P 대출의 구조(1)

● 현행 P2P 대출 거래구조



- 법적 소비자보호장치 부재, 복잡한 법률구조(페이퍼컴퍼니인 연계대부업자)
- P2P업체에 대한 검사권 부재, P2P업체의 책임제한, '대부'라는 부정적 이미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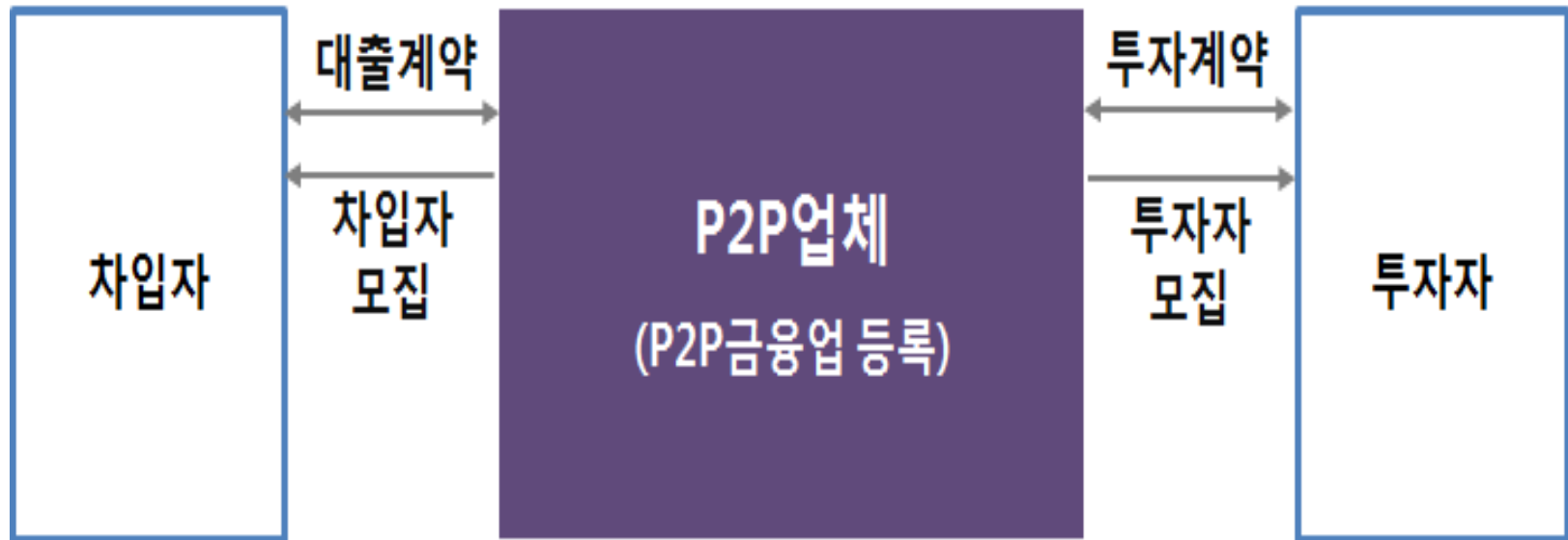
1. P2P 대출의 구조(2)

● 법제화시 고려할 점

- 現 영업구조를 반영하여, 직접형과 간접형의 장점만 취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단순화하고, 다른 법률과의 관계* 등을 고려하여 거래구조 설정

* 개인정보보호 이슈, 기관투자 허용, 중개인의 자기책임강화 등

- 투자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적용배제 필요



* 기본거래구조의 형태는 특정금전신탁, 상법상 익명조합, 준위탁매매와 유사하나, 2가지 계약이 결합되어있는 무명계약이라 할 수 있음

2. 중개업체의 진입요건 등

● 진입요건 설정을 위한 업무범위 검토

- P2P 대출과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 설정 필요

●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

- (겸영업무) 원리금수취권의 양·수도 중개,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 등
- (부수업무) P2P 중개업체의 인력 및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중 **이해상충** 또는 **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업무**는 허용 필요

● 금융위 등록 요건

- P2P 중개업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**금융위원회 등록대상**
- P2P 중개업은 주선에 가까운 역할 및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**자본금 요건 상향 필요**(現 연계대부업 3억, cf. 단순중개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5억원)
- 투자권유 및 대출 등 업무 특성상 인력요건 및 건전성 요건 등 필요
- 다만, 실질적 기능은 중개이므로, **자본비율, 자산건전성, 유동성비율** 등 일반적인 건전성 규제는 불필요

II. 행위규제

3. 정보공시 및 제공의무

- **중개업자 정보 공시**

-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 기본정보 뿐만 아니라 동일차주 정보 등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공시

- **차입자 정보 제공**

-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로서 상품의 유형에 따라 정보의 내용이 달라짐
- 간접형의 거래구조를 선택함에 따라 차입자 정보 중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중개업자의 책임하에 비공개 가능
- 상품의 유형별 제공정보의 종류 차별 필요

- **청약기간 또는 先공시제도 필요**

- 무분별한 투자* 또는 Cherry Picking 예방을 위해 필요

* 일반투자자의 정보확인을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PF 등 특정상품에 선공시 제도 운영

- **사실확인 의무**

- 차입자가 제공한 정보 중 객관적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필요

4. 광고규제

● P2P 대출은 전형적 양면시장

-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대출기관이며,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운용기관임
- 차입자에 대한 광고는 대출광고이며, 투자자에 대한 광고는 투자광고임

● 대출광고(차입자 대상)

- 대부 및 대출 등 기존 여신상품과 유사한 광고 규제 필요

● 투자광고(투자자 대상)

- '원금보장' 또는 '확정수익' 등 오인가능 문구 금지 및 경고문구 필요
- 개별상품에 대한 광고는 사실상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불초청 광고는 불허
- 다만, 중개업체(광고위탁을 받은 자 포함) 등의 홈페이지 또는 SNS 등에 개별상품정보 게시되는 것은 허용

*** 최근 토스, 카카오 등 타 플랫폼을 통해 청약을 받는 것은 P2P 본연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제한 검토 필요**

5. 자기자금 투자

● 자기자금 투자 허용 여부

- (찬성론) 투자자와 중개업자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짐에 따라 대출심사, 채권추심 등에 있어 **자기책임이 강화**될 수 있음, 또한 긴급자금이 필요한 차입자에 대한 적시적 대응 가능
- (반대론) 선대출로 운용되는 경우 **사실상 대부업**과 동일하며, 투자자와 **이해충돌의 문제 발생**(비우량대출의 경우 투자자에게 매도)
 - * (민병두 의원안) 제한 없음, (김수민 의원안) 모집금액의 95%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허용, (이진복 의원안)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허용
- (검토)P2P 대출은 투자자 자금을 기반으로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것이 기본구조로 개념상 **선대출은 불가능하나, 긴급대출 및 청지기**역할 수행을 위해 **제한적으로 자기자금투자 허용 필요**

● 자기자금투자 허용방식(예시)

- 청약금액이 **목표금액의 일정비율**이내로 미달하는 경우, **자기자본의 범위내**에서 투자허용. 다만,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해당 사실에 관한 **별도 공시** 필요

6. 수수료 및 과당경쟁 방지 등

● 수수료 체계

- P2P 대출은 양면시장으로 차입자 및 투자자 모두에게 수수료 수취 가능
- 현재 대출수수료가 아닌 **플랫폼 이용료**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데, 해당 수수료도 대출수수료로서 **최고금리에 포함됨**을 명확화 필요

● 과도한 경쟁 방지

-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, 해당 비용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시장질서 및 이용자를 해치는 **과당경쟁 방지** 필요

● 약관규제

- 중개업자 및 이용자간 권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**약관**에 대한 **적절한 규제** 필요
- 기존 금융업과 유사하게 약관 신고 및 보고제도 도입

III. 투자자보호 장치

7. 투자자 재산 분리

● 투자자의 투자금

- 투자자의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의 재산이 아니므로, 중개업자의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

● 차입자의 상환금

- 거래구조상 대출채권자는 중개업자이므로, 차입자의 상환금이 투자자에게 분배되기전까지는 중개업자의 재산임
- 도산 및 횡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환금도 분리보관 필요

● 중개업자의 대출채권

- 차입자의 상환이전까지 **대출채권의 외관상 소유권자는 중개업자임**
- 중개업자의 도산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**대출채권의 소유권 명확화 필요**

예시) "중개업자의 파산시 대출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"

- * 특정금전신탁 및 준위탁매매의 경우 대출채권의 소유권은 당연히 투자자의 재산이나, P2P 대출은 특수한 성격의 무명계약이므로 **명시적 규정 필요**

** 대출채권을 신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,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성장이 제한될 수 있음

8. 손해배상 책임 등

●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

-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권추심권한은 중개업자에게 있고, 투자자는 직접 추심할 권한이 없음
- 다만, 중개업자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,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함

● 부실정보제공 관련

- 중개업자의 책임하에 중개업자가 차입자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, 사실확인 의무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정보가 제공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책임을 부담
- 다만, 이때 중개업자는 차입자 등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

9. 중간회수시장

● 원리금수취권의 양·수도 원칙 허용

-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의 재산으로 법률에 의한 제한없이 양·수도가 허용됨
- 그러나, 원리금수취권의 양·수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당사자관계가 복잡해지며, 정보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보호의 문제 발생
- 양·수도 방법 등을 제한적 허용 및 중개업자의 역할 부여 필요

● 원리금 수취권의 양·수도 방법

- 해당 원리금수취권(중개업자의 자기투자분 제외)을 제공한 중개업자만을 통한 양·수도 허용
- 기타 방법에 의한 양·수도의 경우에도 **사법적 효력은 인정되나**, 대외적 효력은 없음(예를 들어, 명의개서와 유사)

● 양수인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의 역할

- 양수인은 P2P대출 개시 이후 취득자이므로, 해당 원리금수취권에 관한 정보를 중개업자가 제공할 필요가 있음

IV. 한도 규제

● 대출한도 규제 검토

- (찬성) 위험의 증가 방지, 대출집중으로 인한 부실화 및 사금고화 방지
- (반대) 산업성장 및 이용자의 선택 제한, 다른 규제로 동일 효과 가능

● 대출한도 규제 유형

- 1) 건별 한도, 2) 차입자별 대출한도, 3) 동일차주 대출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, **각 유형별로 규제의 목적과 효과에 차이 있음**
- 민병두 의원안은 차입자별 대출한도(개인 1억원, 소상공인 5억원, 법인 10억원 내) 규제
김수민 의원안 및 이진복 의원안은 규제 없음

● 대출한도 규제 도입에 대한 목적 및 효과를 고려한 검토 필요

- 대출한도 규제는 산업성장뿐만 아니라 P2P 대출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(차입자, 중개업자 및 투자자)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규제로서 도입 관련 검토 필요

11. 투자한도(1)

● 현행 투자한도 규제

	클라우드펀딩	P2P대출 가이드라인
일반투자자	차입자당 5백만원, 연간 총 1천만원	차입자당 5백만원 P2P업체당 1천만원 (非부동산대출 추가1천만원)
소득적격투자자 ¹⁾	차입자당 1천만원, 연간 총 2천만원	차입자당 2천만원, P2P업체당 4천만원

1) 개인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 또는 근로·사업소득 합산 1억원 이상

2) 법인·전문투자자(개인기준 금투상품 잔고 5억원&소득 1억원(or 재산 10억원)) → 투자한도 제한 없음

● 투자한도의 필요성

- (찬성) 강제적 분산투자를 통한 **위험의 분산**, 손실의 한도설정을 통한 **위험확산 방지**
- (반대) 투자자의 **재산권 행사 방해**, P2P 시장성장 저해, 과당경쟁 유발 원인
- (검토) 투자한도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되, **한도 설정**에 대한 기준 등은 **시행령에 위임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규제 마련**

11. 투자한도(2)

● 투자한도 제한 방식

- (상품별 제한) 위험 및 손실 범위제한이라는 취지에 따라 상품별 투자금액 제한 필요
 - * 다만, 담보의 유무 및 종류 등과 같이 상품의 특성에 따른 투자금액의 유연화 가능
- (총액 제한) 투자자의 투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합산 또는 중개업체별 합산 방식이 있음

	시장합산	중개업체별
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전체 위험 한도 설정 가능 - 우량업체로의 쏠림현상으로 시장건전성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개업자간 경쟁감소로 과당경쟁 감소 - 특수 영역(예를 들어, 동산담보 및 신용 등) 중개업체 생존 가능
단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개업자간 투자자 뺏기 경쟁 유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전체 위험 통제 어려움 - 불량업체의 자연도태가 제한되어 사기적 피해 가능

* 시장의 변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필요

12. 한도관리(중앙기록관리)

● 중앙집중형 기록관리 필요

- 동일차주 차입한도, 투자한도 등 한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**중앙집중형 기록관리 필요(cf. 증권형 크라우드펀딩)**
- (차입한도 관리) 차입자의 대출신청단계에서 중개업자에 의한 확인
- (투자한도 관리) 청약단계에서의 투자한도 관리, 원리금수취권의 양수도의 경우 해당 사항을 투자한도에 반영

● 중앙기록관리기관

-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운영중인 중앙기록관리기관(자본법 제117조의13)을 활용하여 초기비용 및 관리 비용 감소 추진 필요

IV. 기타 사항

13. 금융기관 투자 허용

● 투자자로서 금융기관의 참여

- (찬성) 시장활성화, 금융기관의 간접적 심사를 통한 우량 상품 발굴, 금융기관을 활용한 투자자보호 가능
- (반대) 기존 금융권의 대출규제 회피 수단, 여신기관의 본업(여신심사) 위탁, 우량채권의 Cherry Picking* 또는 투자자차별
 - * 영국에서는 법인투자자에게 우량채권을 우선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음
- (검토)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P2P 대출 이미지 제고, 간접적 투자자 보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, **원칙적으로 허용**하되,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투자방법 및 범위를 유연하게 규제

● 금융기관의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근거 필요

- 새로운 형태의 결합계약이며, 외관상 여신심사기능을 위탁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 **금융기관의 투자관련 규정 필요**

14. 자율규제

● 산업성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관 필요

- 기존의 금융산업과 다른 형태의 금융업이며, 다른 핀테크 산업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, **독립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 필요**
- **영국의 경우 과점시장 구조로서 협회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있지만, 한국은 초기 경쟁시장으로 현재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 체계는 한계가 있음**
- 다만, 시장의 규모, 회원사의 수, 협회 운영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, 법정협회를 설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

● 자율규제기관 업무 등

- **중앙기록관리, 이용자 민원 처리, 표준약관 등의 제·개정, 공시기준 준수 점검, 기타 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**
-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**중개업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필요**



감사합니다.